

범죄혐의 보도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례

1. 수사당국의 공표에 근거한 보도의 경우

수사당국은 범죄수사규범에 따라 수사의 책임

자 또는 홍보담당자가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의 경과, 영장의 집행, 사건의 처리와 관측 등에 관해 정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발표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당국의 불법행위가 문제된다. 직무상 수사에 관계가 있는 자는 피의자 및 기타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형소법 제 196 조) 수사당국이 혐의를 걸고 있는데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피의자라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름을 특정하여 혐의를 발표했을 경우 자백의 신용성에 의문이 있다. 또 진범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도 진범으로 숙단하여 단정적인 공표를 했을 경우에는 수사당국(법률상의책임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다.

보도기관이 수사당국의 공표내용을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기사로서 게재했으나 그 후에 혐의가 풀렸을 경우 수사당국의 공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보도기관이 면책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사례 1>

(사실개요) 1954년 8월 13일자 K신문은 『레일 절도 2인조』라는 제목으로 C, K 두 사람이 광산에서 레일을 훔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훔쳤다는 이 레일은 C가 모씨로부터 책무의 대물변제로서 받은 것임이 판명되었다.

(판결요지) 이 기사는 수사당국의 경찰관에 의한 정식발표에 근거한 것으로 취재기자에게는 하등 의심을 가져야 할 사정이 없었으므로 보충취재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문 측은 진실성에 대한 주의의무에 위반함이 없다.

(해설) 권위있는 수사당국의 공표를 신뢰하여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한 이상 신문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입각한 판결로 학설도 이를 시인한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공표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 할지라도 이를 과장하거나 각색하여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사유의 법리적용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례 2>

(사실개요) 1954년 3월 8일자 Y신문 석간 4판은 『W, K 혐의 짚어간다』 등의 제목으로 橫濱에서 우편자동차가 습격을 받아 현금을 탈취당한 사건을 추격중인 합동수사반은 W, K를 별건 사기혐의로 체포했으나 시경수사과장은 기자단에 W, K 두 사람이 본건의 유력용의자로 추정되어 확실한 증거만 잡히면 구속영장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동일자 조간 9판, 11판 등에서는 『우편차갱의 유력용의자』 『산리에서 체포, 합동조사반 본격적 취조』 『우편차갱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제목으로 W, K를 갱 사건의 혐의자로서 본격적 취조에 들어갔으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판결요지) 수사과장의 발표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혐의 짚어간다』는 제목도 독자에게 「갱」 사건의 범인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편차 갱의 유력용의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는 사실에 반한다. 대사건의 수사에서는 흔히 경미한 사건혐의로 우선 취조하는 것이 상례인데 수사관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W, K가 주범이라는 심증이 깊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의 단순한 주관적 혐의予想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강도사건의 혐의자로 체포되었다고 단정하여 보도한다면 신문측에 과실이 있다.

(해설) 상당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고 뚜렷한 판단도 내리고 있지 않다. 판결이유만 봐서는, 취재기자는 경찰의 예상에 따라 기사를 쓴 것으로 수사의 상황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속영장청구 등 명확하게 사실에 반하는 기사에 관해 증거의 취재없이 보도했다고 하면 신문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례 3>

(사실개요) 1953년 5월 18일자 S신문은 『각성제밀매검색, 10개소 급습 15명 체포』라는 제목으로 판목진시판정의 각성제 밀매에 대한 일제검색을 보도했는데 그 앞부분에 「주모자로 보이는 동정 ○빠짱꼬 점주」, 또 말미에는 「조사에 의하면 수년전부터 모씨가 동경, 수도권 방면으로부터 대량의 네오아고징을 사들여 H, O 등에게 팔아 넘겼으며 다시 H, O 등은 수명의 판매원을 고용 1개에 18엔 정도로 매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계속 취조 중」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판결요지) 본건기사는 경찰서장의 발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O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실제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서장의담화에도 전기적시부분은 없으며 지방통신원이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정보와 억측 등을 가필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사로서 신문지상에 게재되는 사실은 당해 경찰서가 발표한 사실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자기의 억측 또는 확실치 않은 정보 등을 가필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해설) 범죄 혐의의 보도에 있어 경찰서의 발표에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주모자」라든가 「대량으로 사들여」, 「수명의 판매원을 고용하여」 등의 기사는 증거취재를 필요로 하며, 수사당국의 잘못된 발표만으로 신문사가 면책될 수 없다는 사례가 될 것이다.

<사례 4>

(사실개요) 1971년 4월 24일자 J주간지는 『소규자, 胡濱三郎도 피해자?』 『연예인 등으로부터 800만엔을 공갈한 사나이가 체포되어』 등의 제목으로 (1) ○평론사 사장 Y가 800만엔에 이르는 공갈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2)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문을 미끼로 유명한 배우나 신인가수 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협박한 상당수의 여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판결요지) 평론사 사장 Y는 인쇄대금 10여만엔의 공갈혐의로 체포된 것인데 취재기자는 경찰로부터 여죄를 추궁중이나 가수의 추문을 미끼로 800만엔을 공갈했다는 내용은 공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또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을 부인했는데도 본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타신문에 동종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상당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주간지의 게재기사에 관한 판례인데 피해자측이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범죄한 것처럼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확실성이 높은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연예인의 추문폭로기사가 흥미본위로 취급되기 쉬운 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도하는 측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II. 수사당국으로부터의 비공식 취재에 근거한 보도의 경우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는 수사당국의 정식발표를 전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사담당자의 동향이라든가 관계자로부터의 취재에 의해 범죄수사를 포착, 수사담당자로부터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취재원이 수사관으로부터의 정보라는 점에서는 정식발표와 공통점이 있으나 정식발표 단계에 이르지 않았거나 정식발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많이 이루어지는데 수사당국으로부터의 취재만으로 게재하는 정보에 상당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진위를 확인하는 증거취재를 하지 않는 한 상당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에 문제가 있으며 판례도 상이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1>

(사실개요) 1950년 2월 8일자 K신문은 『강도 3인조』 제하에 M, O, Y 등 남자 3명이 주택에 침입. 고함을 지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수건으로 입을 가렸으나 저항이 심해 도주했는데 이 밖에도 강·절도를 한 일이 있어 여죄를 취조 중에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판결요지)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강도혐의는 아직 예상에 불과한 단계에서 수사관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사의 기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서를 본다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 강도미수는 단순한 예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는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사담당자의 의견설명을 그대로 믿고 보도한 때에는 취재상의 과실이 있다.

(해설) 수사당국의 의견설명에만 근거한 보도에 증거취재가 요청된다고 했으나 증거취재의 방법으로서 조서 등의 열람을 요구해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당시의 수사상황과 취재방법은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기자가 직접 조서를 보고

취재하는 일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범죄현장의 조사, 피해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의 취재 등에 의해 증거를 구하는 편이 합리적 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 2>

(사실개요) 1952년 12월 30일자 Y신문은 『7명의 자식 이끌고 가출, 남편에게 식발당한 처』라는 제목으로 권투선수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식발까지 당한 주부가 견디다 못해 7명의 자식을 이끌고 가출, 친지가 경찰에 보호원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판결요지) 권투선수가 그의 처를 폭행했거나 식발한 사실은 없으며 기자가 취재한 보호원은 친지가 구두로 신고한 것을 경찰관이 서류로 작성한 것으로 그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신문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취재하고 있으나 취재기자의 판단에 의해 보도하는데 있어 보도의 정확성확보가 불충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례 3>

(사실개요) 1966년 6월 4일자 Y신문은 『빌딩건설로 사기, 전형사 등 2명 서류송청』이라는 제목으로 회사간부 W, 부동산업자 S는 타인의 토지매각위임장을 위조, 이를 재단법인 N 협회에 제시하고 『토지를 매각하면 이익을 나누어 줄테니 계약금을 내달라』고 하여 1, 100만엔의 약속어음을 받아 경찰서로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혐의로 서류송청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판결요지) 본건기사는 경찰관으로부터 사적으로 정보를 얻은 것을 경찰서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근거한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단순한풍문과 사적인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범죄사실에 관한 기사가 진실에 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사의 작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경찰의 정보를 증빙하는데 충분치 않다.

(해설) 수사당국의 공적인 홍보활동에 의한 정보가 아니면서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사작성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의 판례에서는 볼 수 없는 엄격한 태도이다.

<사례 4>

(사실개요) 1969년 3월 14일자 A신문은 『가면 벗기면 폭력 사장』 『복지기부의 미담주인공, 뒤에서는 점원에게 난포』 『두려워서 신고 못하는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K는 카바레, 터키탕을 경영하면서 평소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부를 해왔기 때문에 미담의 주인공으로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으나 (1) 하참은 일로 자기의 종업원을 구타하여 폭력혐의로 서류송청되었다. (2) K는 폭력단을 경호원으로 고용, 이따금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판결요지) (1)은 진실인 것으로 인정되나 (2)는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취재기자는 경찰서, 검찰청, K의 종업원 등으로부터 취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취재경위가 애매할 뿐 아니라 기사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아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증거상 취재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취재의 근거 그 자체가 박약했던 것인지 아니면 신문이 취재원을 밀고했기 때문인지 판결이유만 읽고는 알 수가 없다. 만일 후자라면 뉴스제공자와의 신뢰관계를 지키기 위해 취재원을 밀고하여 불법행위책임을 감수한 것이 될 것이다.

<사례 5>

(사실개요) 1963년 12월 1일자 S신문은 『입을 막아 죽이다? 영아변사, 가족들을 조사』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주소, 성명, 직업과 영아의 이름을 특정하여 영아의 입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어 있음을 비관하여 가족중의 누군가가 영아의 입과 코를 막아 죽인 혐의가 짙으며 경찰은 가족들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일심은 살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추측과 대강 일치하고 있으나 특정인이 죄를 범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 신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취재기자가 해부담당의사 및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취재하여 정보를 얻고 이를 보도해도 좋다는 양해도 받았다는 점, 사회부장은 피의자불명의 살인혐의감정처분허가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또 수사관으로부터 곧 가족들을 조사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취재거부 당했다는 등의 사실관계아래서는 상기 정보에 대한 증거취재를 하려고 해도 그 이상 진상을 탐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신문의 면책사유를 인정했다.

(판결요지) 수사당국에서 아직 가족들에 대한사정청취도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사의 가능성도 있고 공적발표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가족이 살해한 것처럼 독자에게 인상을 주는 기사를 게재하려면 가족들을 재차 방문하여 취재하는 등 한층 더 신중한 증거취재를 했어야 했다. (원심에 파기, 공소심은 최고재판소와 동일한 이유로 신문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설) 권위있는 수사당국으로부터 취재하고 더욱이 가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목할만한 판례이다. 수사당국이 공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설사 권위 있는 수사관으로부터 취재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사내용에 따라서는 증거취재를 요구하는 최고재판소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판례의 동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사내용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III. 보도기관의 독자적인 취재에 근거한 보도의 경우

보도기관이 수사당국으로부터의 취재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로 수사당국이 범죄혐의의 단서를 잡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 보도기관이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취재보도하는 경우와 수사가 착수되었으나 수사당국이 수사의 비밀을 엄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기관이 독자적으로 취재보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피해자 및 기타의 관계자들로부터의 사정청취의회에 있어서는 질의, 소문 등 취재원은 많으나 범죄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의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또한 신속성의 요청때문에 명예침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점에 관한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신문의 독자적인 취재에 의한 보도가 예외적인 때문인지 아니면 수사에 의한 정확성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취재에 근거하여 보도하므로써 진실에 반하는 기사게재를 하지 않기 때문인지 명백하지 않다.

<사례 1>

(사실개요) 1950년 9월 13일자 C신문은 『진실을 말하는 청년을 권총으로 협박』 『세번이나 직장을 뺏아』 『광도시의원 부정사건 인멸 기원』 제하로, T 광도시의원의 마약취체법위반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Y청년이 T의 압력으로 직장을 빼앗기고 권총으로 죽여 없앴다고 협박받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판결요지) 취재기자는 Y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 지검검사로부터 T에게 직무강요의 사실이 있으며 Y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취재하고 또 고검에서 T의 공판기록을 읽고 T가 Y에게 쓸데없는 말을 지껄이면 권총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들은 증인의 증언이 있음을 알아냈다. 또 Y가 근무하는 회사의 간부로부터 이러한 T의 협박사실이 약업계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 등을 취재하여 본건기사원고를 작성, 편집국 간부들도 이를 검토한 끝에 확신을 가지고 보도한 것으로 신문사로서는 사건조사에 의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생각된다.

(해설) 판결이유에서 보면 적시된 각 방면에 걸친 취재를 범죄혐의보도에 있어 신문 측이 정확도가 높은 취재를 했음을 읽을 수 있다.

<사례 2>

(사실개요) 1954년 8월 11일자 Y신문은 『내 자식 남의 자식, 자기자식 윤화사의 보복, 모자 역살기도, 비틀어진 위자료 100 만엔』 제하로 교통사고(사망) 가해자의 고용주 처가 아기를 업고 피살자를 방문했더니 발길로 차고 때리는가 하면 모자를 한길복판으로 끌어내어 질주하는 트럭 앞에 내동댕이치면서 『너희들도 차에 치어 죽어버려라』 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변호사, 평론가 등의 담화까지 실었는데 그 속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표현도 있었다.

(판결요지) 본건기사는 진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시적인 흥분된 감정에 의한 것으로 살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며 진실파악에 신중을 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도 취재기자의 송고를 데스크가 각별히

확인도 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하에 편집보도한 것으로 면책사유가 없다(해설) 업무상 과실치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취재 중 발생한 사건을 기사로 게재한 것인데 기사의 정확성에 관한 전술의 배려를 태만히 하여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로 평가되는 기사를 게재한 책임을 추궁받은 사례이다.